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FTA TRADE REPORT

기존 FTA가 아닌 RCEP의 선택 :
섬유제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관세율을 중심으로

정민규 | 관세법인 더블유(W) 대표이사, 관세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문위원(2011~현재)



기존 FTA가 아닌 RCEP의 선택 : 섬유제품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관세율을 중심으로



정민규

관세법인 더블유(W) 대표이사, 관세사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자문위원(2011~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내년 2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RCEP은 2020년 11월 아세안 10개국(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브루나이,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체결한 메가 FTA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세안 국가와의 관세철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일본과의 FTA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의미도 있다.

특히, RCEP 체결국과 교역중이거나 교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RCEP에 대한 이해 및 아세안과의 FTA 등 기존

FTA와의 비교를 통하여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1980년대 단일산업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여 국가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섬유산업 제품을 중심으로 「기존 FTA가 아닌 RCEP의 선택, 이라는 주제로 설명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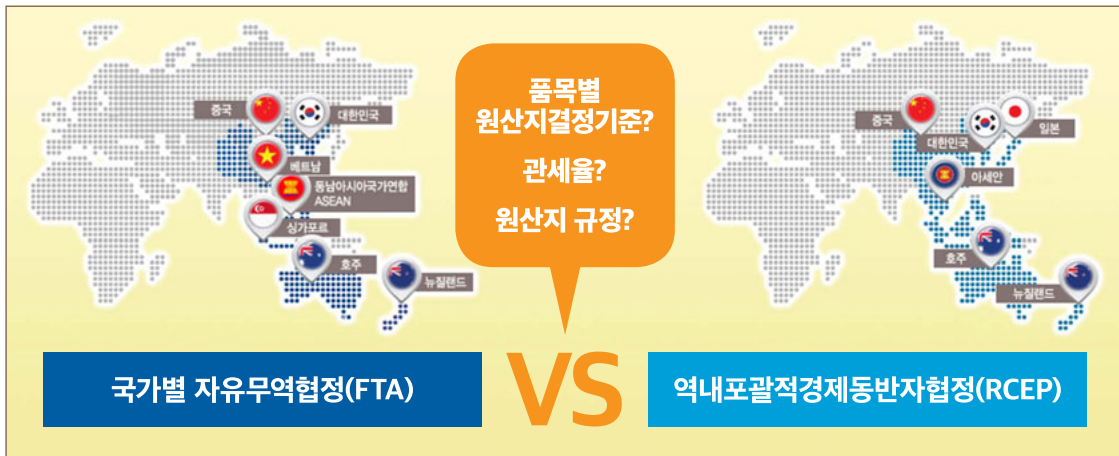
1. 기존 FTA가 아닌 RCEP 의 선택

아세안, 중국, 호주,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기업은 RCEP과 기 체결 FTA(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싱가포르, 한-중, 한-호주, 한-뉴질랜드)의 관세율,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 규정 등의 비교를 통하여 수출자 입장에서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RCEP에 따른 관세율이 더 낮거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복잡하지 않아 역내산 충족이

수월하다면 기존 FTA가 아닌 RCEP을 선택할 수 있다.

RCEP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섬유 제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해 보고 대표적으로 한-아세안 FTA의 부분과 비교해 보았다.



2. RCE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섬유제품이 주로 분류되는 HS 제11부(제50류~제63류)에 해당하는 품목의 RCEP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제63류의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특히, 2단위 류의

변경(CC)¹⁾ 또는 4단위 호의 변경(CTH)²⁾으로 아세안 FTA 등 다른 기존 FTA에 비교하여 복잡성이 낮은 편이다.

1) CC(Change of Chapter):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 2단위(류)가 변경되는 기준

2) CTH(Change of Heading):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 4단위(호)가 변경되는 기준

[표 1] RCEP 제11부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CC	CTH	CTH(특정호 제외)
제50류	5001.00, 5002.00, 5003.00	5004.00, 5005.00, 5007	5006.00
제51류	5101-5103, 5105	5104.00, 5106-5108, 5110-5113	5109
제52류	5201, 5202, 5203	5204-5206, 5208-5212	5207
제53류	5301-5303, 5305	5306-5310, 5311	-
제54류	5401-5404, 5405, 5406	5407-5408	-
제55류	5501, 5502.00, 5503-5506, 5507.00	5508-5510, 5512, 5513.21, 5513.23, 5513.29, 5513.41, 5513.49, 5514.21, 5514.22, 5514.23, 5514.29, 5514.41, 5514.42, 5514.43, 5514.49, 5515, 5516.12, 5516.14, 5516.22, 5516.24, 5516.32, 5516.34, 5516.42, 5516.44, 5516.92, 5516.94	5511 5513.11, 5513.12, 5513.13, 5513.19, 5513.31, 5513.39, 5514.11, 5514.12, 5514.19, 5514.30, 5516.11, 5516.13, 5516.21, 5516.23, 5516.31, 5516.33, 5516.41, 5516.43, 5516.91, 5516.93
제56류	전부	-	-
제57류	전부	-	-
제58류	전부	-	-
제59류	전부	-	-
제60류	전부	-	-
제61류	전부	-	-
제62류	전부	-	-
제63류	6301-6305, 6306.12, 6306.19, 6306.40, 6306.90, 6307.10, 6307.90, 6308.00, 6309.00, 6310 (예외: CC 또는 RVC 40% 6306.22, 6306.29, 6306.30, 6307.20)	-	-

자료: RCEP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자 정리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RCEP에 포함된 아세안국과의 기존 FTA에서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경기준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RCEP에서는 섬유제품 전반에 걸쳐 세번변경기준이 주로 적용됨과 달리, 한-아세안 FTA에서는 세번변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의류제품(제61류, 제 62류)과 기타 섬유제품(63류)에 대하여는 가공공정

[표 2] 한-아세안 FTA 제11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구분	CC or RVC 40%	CC+SP ³⁾ or RVC 40%	CTH or SP or RVC 40%	CTH(특정호 제외) or RVC 40%	WO ⁴⁾
제50류	5001-5003	-	5007	5006	-
제51류	5101-5105	-	5111-5113	5109	-
제52류	5201-5203	-	-	5207	-
제53류	5301-5303,5305	-	5309-5311	-	-
제54류	5401-5406	-	-	-	-
제55류	5501-5507	-	-	5511	-
제56류	5601-5609	-	-	-	-
제57류	5701-5705	-			
제58류	5801-5809	-			
제59류	5901-5911	-			
제60류	-				
제61류	-	6101-6117	-	-	-
제62류	-	6201-6212, 6215-6217, 6213-6214 (특정호 제외)	-	-	-
제63류	-	6301-6308	-	-	6309-6310

자료: 한-아세안 FTA “부록 2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자 정리

3) SP(Specific Process): 가공공정기준으로, 수출국에서 특정 공정(예: 재단, 봉제, 날염, 염색 등)을 거쳤을 것을 요구하는 기준이며 자세한 내용은 협정 참고

4) WO(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으로, 수출국의 영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되었을 것을 요구하는 기준

기준을 조건으로 병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RCEP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경우, 제54류에서 제56류에 해당하는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 워딩·부직포 원소재 및 원단은 CTH가 다수인 반면

한-아세안 FTA는 모두 세번변경기준 하에서 CC가 적용되기에, RCEP 적용 시 한-아세안 FTA보다 역내산 충족이 용이하다.

원산지결정기준 측면 상 기존 FTA가 아닌 RCEP 적용이 유리한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기 바란다.

※ RCEP 활용 예시

수출품목 : 61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의 의류 및 부속품)
 원재료 : 60류(편물)
 상대국 : 아세안
 역내 부가가치비율 : 30%
 공정 : 재단 및 봉제 체결국 미수행



[FTA 활용]

구 분	RCEP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CC	CC+SP(재단·봉제 수행) 또는 RVC 40%
판 정	역내산	역외산

3. RCEP 관세율

RCEP 관세율은 부속서 1 관세 양허표에서 규정하고 있다. RCEP 특혜 관세율의 특징은 체결국별로 양허관세율이 다르며, 특히 이러한 내용은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6조(관세 차별)에서 다루고 있다.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는 수입물품이 RCEP 하에서 역내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한국산인지 호주산

인지 여부에 따라 양허표에 근거하여 각기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메가 FTA인 RCEP에 있어 관세율 적용에 복잡성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다만, 이를 면밀히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한다면, 기존 FTA 보다 호혜로운 특혜 관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표 3] RCEP 부속서 1 구성

국가명	부속서 1 구성 내용
공통	일반 주해
브루나이	두주
	관세 양허표
캄보디아	두주
	관세 양허표
인도네시아	두주
	대 ASEAN 양허표
	대 호주 양허표
	대 중국 양허표
	대 일본 양허표
	대 한국 양허표
	대 뉴질랜드 양허표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	
라오스	두주
	관세 양허표
말레이시아	두주
	관세 양허표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
미얀마	두주
	관세 양허표
필리핀	두주
	공통 양허
	대 호주, 뉴질랜드 양허표
	대 중국 양허표
	대 일본 양허표
	대 한국 양허표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	
싱가포르	두주
태국	두주
	관세 양허표
	제2.6조(관세 차별)제3항에 관한 부록
베트남	두주
	대 ASEAN 양허표
	대 호주 양허표
	대 중국 양허표
	대 일본 양허표
대 한국 양허표	

국가명	부속서 1 구성 내용
베트남	대 뉴질랜드 양허표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호주	두주
	관세 양허표
중국	두주
	대 ASEAN 양허표
	대 호주 양허표
	대 일본 양허표
	대 한국 양허표
	대 뉴질랜드 양허표
일본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두주
	관세 양허표
한국	대 ASEAN 양허표
	대 호주 양허표
	대 중국 양허표
	대 일본 양허표
	대 뉴질랜드 양허표
	제2.6조(관세 차별) 제3항에 관한 부록
	뉴질랜드
관세 양허표	

자료: RCEP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자 정리

4. 주요 섬유제품 RCEP 관세율 적용 예시

주요 섬유제품의 RCEP 국가 수출 시, 품목분류부터 원산지결정기준 그리고 관세율까지 RCEP 선택 적용 예시를 살펴보고, 우리 섬유기업 나아가 RCEP 체결국과의 FTA 활용을 준비하는 모든 기업은 참고하기 바란다.

① 품목분류

품목분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과 관세율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수입국의 세번 체계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고, 불명확한 경우 수입자 또는 수입국 관세당국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활용

[표 4] 품목분류 예시

명칭	세번(6단위)	수입국	수입국 세번	수입국 세번 품목명
운동복	제6211.42호	인도네시아	6211429000	면으로 만든 기타 의류
인조섬유제	제6105.20호	인도네시아	6105200010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남성 셔츠			6105200090	재생·반합성 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자료: RCEP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자 정리

②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RCEP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6자리 세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 5]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예시

명칭	세번(6단위)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운동복	제6211.42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남성 셔츠(인조섬유제)	제6105.20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면 브래지어	제6212.10호	2단위 세번변경기준

자료: RCEP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자 정리

③ 관세율 비교

운동복(제6211.42호) 및 인조섬유제 남성 셔츠(제6105.20호)를 인도네시아로 수출 시 기본 관세율 25% 또는 한-아세안 FTA 5%가 아닌 RCEP에 따라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함이 확인된다.

[표 6] RCEP vs. 한-아세안 관세율 유리한 품목 적용 예시

수입국 세번	수입국 세번 품목명	기본세율	한-아세안	RCEP 관세율(1년차)
6105200010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25	5	0
6105200090	재생·반합성 섬유로 만든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	25	5	0
6211429000	면으로 만든 기타 의류	25	5	0

자료: RCEP 협정문을 바탕으로 작성자 정리

5. 마무리하며

본 고에서는 섬유기업을 중심으로 기존 FTA 보다 RCEP 활용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여러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RCEP이 발효되면, 이제는 메가 FTA로 접어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동일 국가와 적용될 수 있는 FTA는 보다 더 다양해진다는 뜻이다.

루이 파스퇴르의 '발견의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는 말처럼, RCEP을 시작으로 보다 더 시장개방 자유화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발효된다면 많은 기업은 복잡한 FTA 환경에 놓일 것이 뻔하다.

이 때 우리 기업이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잘 준비하고 있어야 결국 기회가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유익할 것이라 하겠다.

FTA는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어, 기업에게 스파게티 볼 효과를 가진다는 말을 흔히 한다.

다만, 이러한 FTA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또 다른 기회를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다.

다가오는 메가 FTA를 잘 활용하여 또 다른 기업의 엔진을 장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